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'12년 2월 21일(화) 08: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박형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(02-2110-5221), 최수연 사무관(02-2110-4713)		

중소기업, 국공유지 사용 더 쉬워진다

-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한다고 밝힘

○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·폐하천·폐도랑·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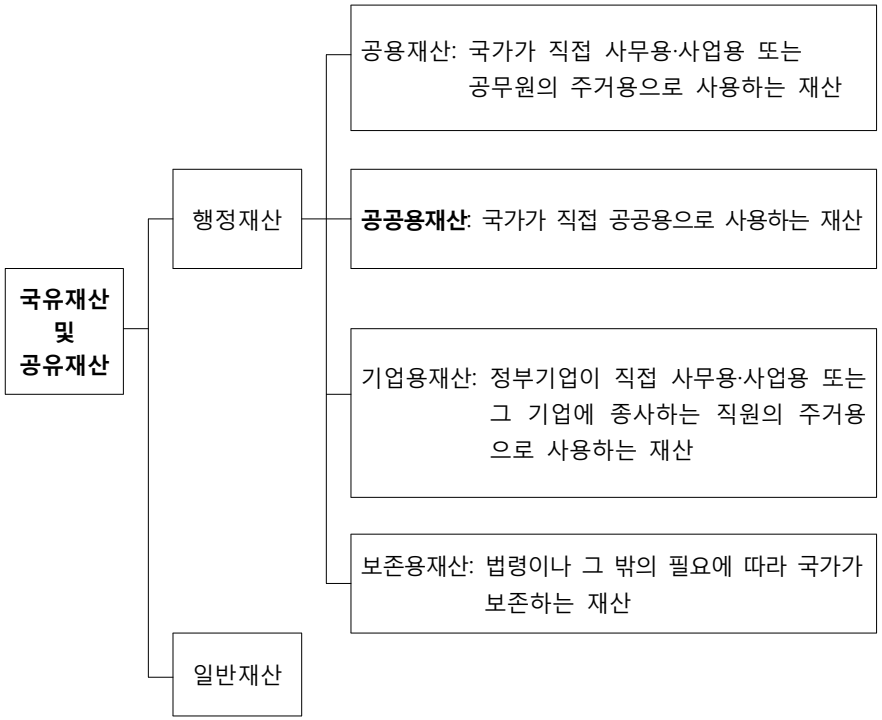
○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,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,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

□ 이 시행령 개정안이 제9회 국무회의('12.2.21)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(공유재산)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,

○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□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

참고 1 **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른 구분**



참고 2 기특법 및 시행령 조문대비표

기특법	기특법 시행령(현행)	시행령 개정안
제14조(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)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(廢道)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.	**제9조(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)** 법 제14조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폐도·폐하천·폐도랑·폐제방 또는 그 밖에 **공공용 재산으로서의**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.	**제9조(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)** 법 제14조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폐도·폐하천·폐도랑·폐제방 또는 그 밖에 **행정재산으로서의**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.